

의안번호	2203606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4.10.25.
추계번호	24C264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2조 (안마사)	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)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¹⁾를 준용하지 아니함(제4항) - (현행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- (개정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2조 (안마사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“장애인일자리지원” 사업 시행주체에 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할 경우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추진

1) 제66조(자격정지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(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

2.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

여부 및 사업 규모,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(기존 사업비 활용 또는 정부 보조 등)이 정해져야 하나,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“장애인일자리지원” 사업의 내역사업인 ‘시각장애인안마사과견’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1,360명에 대한 임금 및 사용자부담금 등 202억 7,100만원(2024년 예산액)을 배정하였음
- 개별 공공기관이 현행 ‘시각장애인안마사과견’ 사업의 단가를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, 기존 공공기관 운영비 또는 출연금 등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지만,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나아가, 추계를 위해서는 사업 확대에 따라 신규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근무할 인력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나, 현시점에 추가적인 노동 공급을 예상하기 어려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